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인 경기악화 및 국내 경제성장 위축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세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및 산하기관은 총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
 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경기 둔화 추세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효율적인 조치가 요구됨
- 경기 악화와 경제성장 위축은 서울시 세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산절감체계의 개선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가 요망됨
-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의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함

12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는 서울시 예산절감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예
 산절감 원칙을 제시함
- 예산절감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정책의 단계적 과정을 기획·요구, 편성·집행,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 예산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관련 문헌 및 법률을 검토하며, 예산절감 및 낭비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음

2 서울시 예산절감정책의 실태 분석

21 서울시 예산절감 내용과 범위

- 서울시의 예산절감은 예산의 편성·집행·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함
- o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함
- 서울시의 예산절감 계획은 예산 편성 이후 집행연도 초에 수립되며 평가 는 다음 연도에 이루어짐
- 예산 편성이 집행연도 전해에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예산절감 계획은 편성된 예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다음 해인 집행연도에 수립됨
- 절감계획 수립 이후 예산집행연도에 예산절감 노력이 이루어지고 다음
 해에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 서울시 예산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90%가 넘는 집행률을 보여줌

22 경상경비 부문

 2008년에서 2012년 간 서울시 경상경비의 결산액은 2008년부터 2011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2.19%의 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

23 서울시 수입확대 현황

서울시의 예산절감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수입 확충도 포함됨. 서울시는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8월 「38세금 징수과」를 신설하여 2013년 3월까지 5,000억 원의 체납시세를 징수함

표 1 서울시 체납액과 징수 실적(2008~2012년)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 체납액	3,308	2,588	2,994	3,232	3,592
체납 징수액	1,542	1,661	1,602	1,579	1,658
(전년도 체납액 대비 징수 비율)	(58.92%)	(50.21%)	(61.90%)	(52.74%)	(51.30%)
38세금 징수 실적	520	494	433	424	413
(38세금 징수과 징수 비율)	(33.72%)	(29.74%)	(27.03%)	(26.85%)	(24.91%)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24 서울시 재원 재투자 현황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이 가장 많이 추가 편성된 5개 분야의 전 해 예산에서 절감된 재원이 재투자된 것으로 추정됨

표 2 서울시 추가 편성 예산 상위 5개 분야

(단위:%)

2008		2009		2011		2012		2013	
대중교통 물류기타	33.04	지역 및 도시	14.09	대중교통 물류기타	42.29	대중교통 물류기타	44.62	지역 및 도시	22.98
지방행정 재정지원	22.11	주택	13.47	지역 및 도시	34.80	재정 · 금융	19.59	도시 철도	16.00
유아 및 초중등 교육	20.22	도로	10.47	주택	6.99	지역 및 도시	19.52	지방행정 재정지원	10.71
주택	6.06	대중교통 물류기타	9.32	지방행정 재정지원	6.25	보육 · 가족 및 여성	12.05	예비비	10.65
지역 및 도시	5.97	노동	9.19	취약계층 지원	4.33	유아 및 초중등 교육	3.04	일반 행정	9.36
기타	12.61	기타	43.45	기타	5.35	기타	1.18	기타	30.29

자료: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2008-2013)

3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사례

31 **예산낭비 사례**

- 서울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예산 낭비를 초래
 한 것으로 분석됨
- 첫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고, 중복투자가 발생하였음(한강 아라호 사업)
- 둘째,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전략적 재원배분이 이뤄지지 않았음(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
- 셋째, 사업의 추진을 통해 발생할 정책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였고, 이 러한 문제 발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개선이 시행되지 않았음(우면산 터널)
- 이러한 사례는 서울시가 재정정책을 운용할 때 기획·요구단계, 편성·집 행단계, 사후관리단계의 실효성 있는 원칙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 인하는 결과임

32 예산 절감 사례

- 일본 도쿄도는 '기능하는 밸런스시트'를 축으로 하여 회계적 관점에서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각 연도의 행정책임 정도를 수치로 표 시하여 부문 책임자가 각 활동에 책임지는 구조로서 행정의 책무성을 강 화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일본 오사카부는 의료, 복지,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의 개별 시책을 재조정하여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하는 서비스의 삭감 및 폐지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복지예산 축소에 방점을 둔 예산 절감 사례라고할 수 있음
- o 일본 미에현은 1996년부터 사무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한 뒤, 성과지표

- 를 설정하여 사무사업 목적 평가표를 작성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무사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예산절감시스템은 주로 의료서비스와 어린이 복지·보육 서비스의 축소 등 교육, 의료, 건강 부분의 지원 축소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구조임
- 이 시스템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의 재정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는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용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할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4 서울시 예산절감정책의 평가

41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해 심사분석 의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는 세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첫째, 심사분석 의뢰서 작성과 관련하여 지침 및 매뉴얼이 각 사업의 특성별로 정확히 매칭되어 있지 못함
- 둘째, 심사분석 의뢰서 작성 공무원의 숙련도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의뢰서 내용의 오류가 발생함
- 셋째, 과거 형식적인 타당성 조사 등으로 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심사접수 이전에 수정단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
- 이 때문에 사업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수요 및 비용이 부정확하게 추정됨
 으로써, 작성된 사업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곤란하여 사업의 부 실을 초래하였음
- 따라서 투·융자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공
 공투자관리센터가 분석한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의 재무적·경제적 타당

- 성 검토 자료가 실제 투·융자사업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수의 유사 사업을 포함해 본위원회에서의 심층심사 가능 등을 사유로 소위원회의 개최를 생략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투·융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대한 실제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별도의 검토 과정 없이 예산 변경이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단 완료된 사업은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관리 등에서의 문제점 분석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42 예산낭비 신고제도

- 2008년부터 시행된 예산낭비 신고제도는 실제 운영과 시민 눈높이 간
 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이후 예산낭비 신고로 접수된 사항 중 실제 예산관련 신고 및 제 안은 각각 평균 3.68%와 37.8% 수준에 불과하고, 이 중 실제 시민에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신고건수 대비 9.83% 수준에 그침
- 시민들의 신고내용이 주로 민원성, 아이디어 수준으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대부분 사례금만 지급되고 있음
-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액은 2010년 5만원에서 2011년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2013년부터는 신고 내용에 따라 10~30만원이 차등 지급(예정)되고 있음
- 최근 5개년(2008~2012년) 동안 도로교통, 기타, 일반행정, 환경공원 부문관련 신고가 전체 신고의 84.32%에 달하여 편중 현상이 두드러짐.
 특히 도로교통은 전체의 34.42%를 차지함

43 PAYGO 제도 도입 검토

- 법률적 의미의 의무지출은「이자지출」과「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4의2호)을 의미함
- 서울시 의무지출은 2008년(42.49%)부터 2012년(50.18%)까지 꾸준 히 증가하였음
- 의무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2012
 년 현재 39.14%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자치단체 이전 비용 등에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의 비용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결국 서울시의 재량지출 범위는 지속적으로 축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PAYGO(Pay-as-you-go) 원칙은 미래 신규 지출을 억제할 수 있으나,
 기존 의무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의무지출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 내지 구조조정이 중요함

5 서울시 예산절감 시스템의 개선방향

51 예산절감 지침의 체계적 구축

예산절감 시스템은 기획·요구단계, 편성·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의 세가지 단계가 균형을 이룰 때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 없이 체계적인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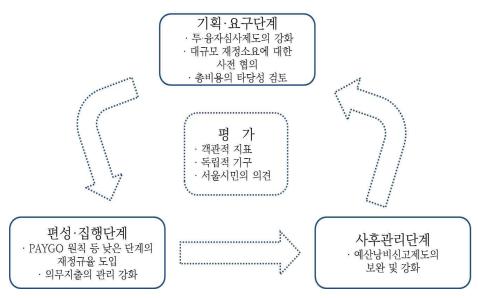


그림 1 예산절감정책의 단계적 과정

- 기획·요구단계에서는 재원이 수반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추진 시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재 조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함
-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 사전협의 내실화, 총비용 검토
- 편성·집행단계에서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대책을 의무화(PAYGO 원칙)하며 보조사업 일몰제의 도입을 추진함
- 집행단계에서는 재정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서비스 체 감도를 제고하고 예산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간 네트워킹 강화 및 비용절감
-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성과 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 하여 반영하고, 연례·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은 이월예상액을 포함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현액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함

표 3 단계별 예산절감체계 구축

기획·요구단계	편성·집행단계	사후관리단계
 투·융자심사 제도 강화 재정지원 시 사업추진 가능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점검 대규모 재정소요에 대한 사전협의 준수 총비용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 재원 배분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대책 의무화(PAYGO 원칙)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예산당비 신고제도의 시민 접근성 강화 예산당비 신고접수 및 조사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강화 예산당비로 판명된 사업의 축소·폐지 등 피드백 강화

52 예산 운용의 생산성 제고

521 PAYGO 원칙의 중장기적 도입

- 시의회, 자치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추진
 이 필요함
- 예산수립 시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엄격히 제한함
- o 대규모 사업은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함
- o PAYGO 원칙을 신규 자체사업에 도입하여 신규사업으로 인한 재정부 담을 배제함

522 재정소요점검표(Scorekeeping)의 작성

- PAYGO 원칙의 첫 번째 단계는 재정소요점검임. 이는 새롭게 입법되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행위임
- 재정소요점검은 일례로서 제주도 의회에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으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거나 세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지를 점검하고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제·개정으로부 터 향후 5년의 비용추계를 함

523 **강제삭감제도의 도입 검토**

o 조례 제정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조례안에 '재정준칙조례' 위반의 의견을 붙여 시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음

또 다른 하나는 예산과정에서 PAYGO 원칙을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은
 항목의 예산이 의결된 경우 '재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음

524 **PAYGO 원칙 실행 방안**

- PAYGO 원칙 도입 초기에는 내부적인 재정운용 준칙으로 도입하여 시 범적인 시행을 거친 후 점차 공식적인 성격을 부여함
- PAYGO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 준칙의 시행을 책임질 부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현재 구성 상 예산 기능을 맡고 있는 경영기획실 산하 예산담당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집행부서와 더불어 재정 예측을 담당하는 기구와 예산사업 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 두 기구는 서울시청에서 독립된 기구로서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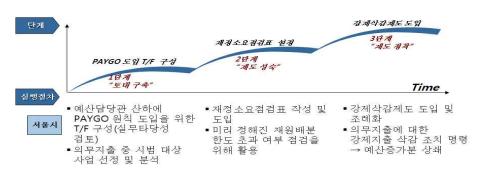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PAYGO 원칙 실행 단계

525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 1) 인센티브제도 강화
 - 개별 부처의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노력과 기본경비를 연계시키는 인센 티브제 시행이 필요함

또한 실·국의 이행실적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각 실·국과 예산담당자 간
 예산협의 과정도 차별화하여 운영함

2) 인센티브제도 시행 방안

 예산안 요구 시 실·국별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현황'을 정리하여 예산 부서로 제출 : 지출 생산성 제고 추진실적 조사와 지출 생산성 제고 추진 행정체계 및 실행방안 제출

53 예산낭비 신고제의 실효성 강화

531 예산낭비 신고제의 활성화

- 1) 예산낭비 신고제의 시민 접근성 강화
 - 다산 콜센터는 서울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정 소통 창구이며 기존 국민 신문고로 통합된 온라인 신고 외에 다산 콜센터를 통한 예산낭비 신고로 시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실시간 예산낭비 사례의 감시와 신고를 위한
 (가칭) '서울시 예산낭비 신고포상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통해 시민 접근 성을 강화할 수 있음

2) 예산낭비 신고의 통합적 관리

- 타 서울시 신고포상금제도와 연계 운용: 운영주체에 따라 관리감독의 통솔범위(span of control)를 명확히 획정하여 타 신고포상금제도와 연계하여 운용하는 실천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예산낭비 부문별 전문적인 시민단체와 연계한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제
 도의 운영방안 모색도 필요함
-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대상 및 아이디어 제공과 시민단체의 신고담당 및 업무진행을 통한 전문적·협업적 제도운영

532 예산낭비 신고 처리의 내실화

- 예산낭비 신고의 사후 관리 시스템 운용: 서울시민의 신고와 신고포상 금의 지급으로 종결되는 제도운영의 상징적 운영(decoupling)을 탈피 하고 실질적 운영(institutional tight coupling)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 낭비 부무별 개선실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함
-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신고내용의 내실화 추진: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예산당비 사례 및 현장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전문 시민단체인 (가칭)'서울시 예산 낭비 감시단'을 조직하여 예산낭비 신고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o 온라인 예산낭비 신고 프로그램의 개선
- o 예산낭비 신고 전담조직 강화

533 예산낭비 신고의 인센티브 강화

-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액의 현실화: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제도의 성공적 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상금액의 현실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을 예산낭비 사례의 경중에 관계없이 정액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대규모 정책적 예산집행 및 관리시스템상의 오류를 감시하는 경우에 대해 예산낭비 금액을 산술적으로 책정하여 예산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정률 지원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6 **결론**

- 현재 서울시는 체계적인 예산절감 원칙의 수립이 미흡하고, 단순히 실· 국 단위 또는 기관별 예산을 획일적으로 감축하고 있어 재정지출의 생산 성 제고라는 시각에서 이의 개선이 필요함
- o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정책을 기획·요구, 편성·집행, 사후

- 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예산절감의 실질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기획·요구단계에서는 투·융자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대규모 재정
 소요에 대한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총비용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요망됨
- 더불어 투융자심사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사규정 무시, 편법을 이용한 심사회피, 형식적 타당성 조사 등 사업계획 부실 수립 방지를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도 고려되어야 함
- 둘째, 편성·집행단계에서는 PAYGO 원칙 등 낮은 단계의 재정규율을 도입하고, 점진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의무지출의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임
- 편성·집행단계에서는 의무지출관리 강화를 통해 서울시 재정의 경직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이는 예산절감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구체적인 의무지출관리의 방안으로 PAYGO 원칙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인데, 이는 서울시 예산절감의 시스템화를 위한 기초적 재정규율 도입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예산담당관 산하 전담 T/F 구성)
- 셋째, 사후관리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예산낭비 신고제도의 보완 및 강화를 위해 시민 접근성 확대와 절차 개선 및 전담조직 구축 등이 요구됨
- 예산낭비 신고제도의 시민접근성 강화를 추구해 나가야 함
- 또한 예산낭비 신고 절차의 개선은 주요한 개선 방향으로, 예산성과금이
 나 사례금 지급을 위한 단순절차에서 벗어나 낭비에 대한 책임성 부과측
 면에서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 예산낭비 조사·분석 전담조직 구성도 고려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산절감을 위한 3단계 예산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객관적 지표에 의해 검증하며, 서울시민의 의견이 종합된 평가를 도출해야 할 것임
- o 순환 구조의 예산절감정책의 확립은 서울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 재정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